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9
----------	-----

2019. 10. 25. (금)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성원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2019년 10월 8일

다. 회부일자: 2019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2019년 10월 17일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원 의원)

### 가. 제안이유

○ 조례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전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현행)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교육감 등의 책무 사항 신설(안 제3조)
- 적용범위 확대(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
- 용어변경
  - (현행)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 (변경) 안전점검(안 제9조)
  - (현행) 학교 시설물의 안전조치 → (변경) 안전조치(안 제11조)
  - (현행)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 (변경) 유지관리(안 제12조)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적용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최근 들어 학교 교육환경은 학교건물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험성 뿐 아니라 석면시설물과 학교시설 내 라돈과 초미세먼지, 잣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진 발생률 등으로 인하여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 사료됨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마련 및 실행을 촉진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시설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 시설물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게 되는 사고와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

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교육” 이란 시설물과 관련 학교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의 교육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교육감 소속 유치원 및 각급 학교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 시행)** 교육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기준의 준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교육감 소속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 및 재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자로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장은 정기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밀진단의 실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조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시설물 점검결과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 교육감 및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조치 등)** ① 학교장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험시설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위험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거나 예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사립학교의 적용)** 교육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립중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 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사대지(校舍壘地) · 체육장 및 실습지
  - 나. 교사 · 체육관 · 기숙사 및 급식시설
  -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 · 체육장 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 · 수워실 · 옥외화장실 · 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